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2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정의식 생활제품안전과장(02-503-7996), 류연옥 연구사(02-509-7249)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내년부터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 전면 제한 -

□ 2012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하여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공통적용 안전기준의 시행으로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용도의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되어 새롭게 어린이용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도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 공통적용 안전기준에서는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및 **어린이의 학습장애,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인 **납을 함유량 300 mg/kg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의 경우 함유량 75 mg/kg 이하**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또한 공통적용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다양한 제품에 광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 ㎍/㎠/week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 이 밖에 어린이가 **자석**을 두 개 이상 삼켰을 때 자석이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압착되어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학용품, 섬유제품 등에는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이 금지**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용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1. 공통적용 안전기준 주요 내용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3.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현황

붙임 1 공통적용 안전기준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		허용치
납(Pb)		3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니켈		용출량 0.5 ㎍/㎠/week 이하
프탈레이트 가소제	DEHP	총 함유량 0.1 % 이하
	DBP	
	BBP	
	DINP	총 함유량 0.1 % 이하
	DIDP	
	DNOP	

·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 자석(hazardous magnet) 및 자석부품 안전요건

○ 자속지수(flux index)가 50 가우스(kG^2mm^2) 보다 크고 크기가 그림 1 실린더 내에 완전히 들어가는 **위해한 자석 및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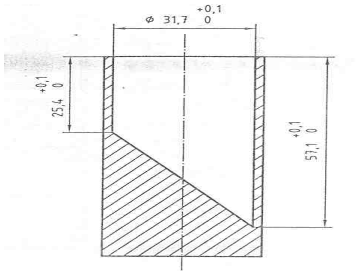


그림 1 작은 자석 측정 용기

붙임 2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현황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차등화 하여 관리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 **(안전인증)**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아 생산단계 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는 제도 (비비탄총, 압력솥 등 14품목)
- **(자율안전확인)** 최초 수입·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하는 제도 (완구, 학용품 등 47품목)
- **(안전·품질표시)** 제조자·수입자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하는 제도 (의류, 화장비누 등 30개 품목)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인증번호:)	(신고번호:)	

□ 어린이보호포장제도

○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쉽게 개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포장 및 용기**로 대상품목은 광택제, 방향제, 세정제 등 7개 품목

붙임 3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4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화 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기 계(5)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잠금장치
금 속(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5)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47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3)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 학(8)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품
기 계(2)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 토 건 (1) \|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 (33)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러.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모터달린 보드,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도.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30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유제품(2)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제품(6)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연질염화비닐호스 \| 토건(1) \| 물탱크
생활용품(21)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7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화학제품(7)	얼룩제거제,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자동차용 세정액, 접착제의 포장용기